

'99 농림사업 시행지침

농림부는 "'99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군 등에 시달함에 따라 본지에서는 낙농인들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시행지침중 축산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이에 낙농육우농가에서는 많이 참조 하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각 시·군청이나 협회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편집자주 -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자율)

1.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1. 시행 및 추진방향

- ◆ 초식가축(한우·젓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공급확대
-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 볏짚 등 부존 조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공급체계 확립
- ◆ 청초기 산물배기운동 추진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95~96	97	98(예산)	99	2000	2001~2004
총사업비	61,600	63,333	63,333	49,429	57,143	228,572
보조	19,700	19,000	20,000	18,000	20,000	80,000
융자	17,900	19,000	20,000	22,000	20,000	80,000
지방비	8,500	9,500	9,500	-	-	-
자부담	15,500	15,833	15,833	9,429	17,143	68,572

*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 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3. '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사업

- ◆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필요한 목로개설·용수개발·전기시설·부지정지·목책시설 및 진입로개설사업

-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및 사료작물재배사업(답리작 포함)
- ◆ 볏짚 등 사료화 : 생볏짚등 곤포 silage제조사업, 볏짚(보릿짚)암모니아처리 사업
- ◆ 장비 및 기타 : 조사료생산장비, silo시설, 조사료물류유통기지지원사업 등
- ◆ 청초기 산물배기운동 : 산물배기운동 참여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나. 지원대상
- ◆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5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 2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 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표 1〉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지원비율(%)				지원 단가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70	30	km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km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ha당 3백만원 km당 100백만원, 선별적 지원(노폭 4m, 포장 3m)
조 사 료 생 산		50	50		별도시달 중자·비료대 실소요액 ※ 권장사업분은 자력추진 암모니아gas·주입비 소요액 ※ 비닐구입은 저담
장 비 기 타			70	30	대당 5백만원 50평이내 (평당 30만원) 1기(50톤)당 5백만원 개소당 2,000백만원

- * ① 지원단가는 상한액이며 그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 ② 융자조건 : 연리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③ '99년 실제 적용할 지원 단가는 필요시 별도로 정함
- ④ 부지구입비는 자부담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지원분(경쟁력강화 사업등)을 포함한 지원 한
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
함) : 3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
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등 지원비율은 〈표 1〉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방비가
포함되어야함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5년(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금리 : 연 5%
- 산출배기 : 보조 100%, 1인당 1일 8시간 기준
22,000원
- 라.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사업타당성 검토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
발위)→대상자 선정(시·군, 시·도)→시·도예산
배정(농림부)→시·군예산배정(시·도)→대상자확
정 및 통보(시·군, 시·도)→사업대상자(농가)

4. 2000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
-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5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
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
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이
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의 쌀 전업농(생벚짚등 곤
포 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 다. 신청절차
-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
- 라. 구버서류
-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
서의 관련 서식)
-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 마. 선정 우선순위

〈농가〉

-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한 자
- ◆ 초지·사료포부지를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
화·단지화할수 있는자
-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 한우 및 젓소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 ◆ 20ha 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벚짚등 곤포 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협업체·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 ◆ 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과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 ◆ 농업회사법인(생벚짚등 곤포 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
- 바. 선정절차
-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사.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5)
-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정계)
-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

II. 축산분뇨처리시설

1. 시책 및 추진방향

- ◆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지역등)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대상농가에 우선 지원
- ◆ 기설치된 농가의 노후기계설비 보완 및 4대강 유역의 특정지역내 소규모 농가에 축산분뇨시설 지원
 - ※ 오분법에 의한 특정지역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내에서는 모든 축사시설자금의 신규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기존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 시설자금은 우선지원)

2. 연도별 지원계획

구분	92~95	1996	1997	1998(P)	1999	2000~2004	
사업량	36,678	9,696	5,389	4,662	5,000	25,000	
사업비	계	330,062	135,300	158,250	170,375	117,250	853,525
	보조	119,715	59,050	81,125	88,188	61,625	451,063
	용자	177,236	59,180	46,275	49,312	33,375	249,037
	자부담	33,111	17,070	30,850	32,875	22,250	153,425

3. 1999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지역

- ◆ 4대강(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지역
- ◆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가) 단독(개별)시설

- ◆ 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농가
 -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기지원분을 포함한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 축산분뇨시설을 1990. 12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 4대강(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농가
 - (나) 공동시설·툽밥제조시설등
- ◆ 축산단지, 축산계역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협조합(툽밥제조시설은 임업조합 포함)
 - 공동시설은 1990. 12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 대상 포함
 - (다) 정착촌구조개선
-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 법인체·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

3) 사업내용

(가) 단독(개별)시설

-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저장액비화시설, 퇴비화 건조장
- ◆ 정화방류시설 : 활성오니법시설, 산화구법시설, 톱밥토양여과법시설(간이정화조 설치대상에 저류조 시설 포함)
- ◆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액비운반탱크, 스키드로다(트랙터·경운기등 운반장비 제외)

(나) 공동 시설

-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저장액비화시설, 공동 퇴비사
 - ◆ 정화방류시설 : 오분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 부대 기계·장비 : 바큇카·압물카·살포차량
-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단독시설 또는 (나)공동 시설

(라) 톱밥제조기설등 : 공동시설공급용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마) 지원규모 및 조건

- (1) 축종별 축사㎡ 단 위당 사업비(자부담분 포함)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산㎡단위당 사업비단가(조정시 별도 통지예정)

(단위:천원/㎡)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3	21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기준(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등 축사 신·증축계획면적 포함)
- ② 젓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

- ⑤ 노후기계설비 보관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 설비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

(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자부담분 포함)

(단위:백만원/개소)

구분	돼지	한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300	200				
공동시설	1,500	800	1,000			
톱밥제조시설	150					

(3) 지원조건

- ◆ 단독시설·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
 - 지원비율 : 보조 50%이내, 용자 30%이내, 자부담 20%이상
 - 용자조건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리 : 연 4.5%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100%
- (4)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자부담분 포함)
- ◆ 축산분뇨퇴비 처리장비 : 10백만원이내
- ◆ 축산분뇨 운반장비 : 30백만원이내
 - ※ 축산분뇨퇴비처리 및 운반장비는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5) '99 사업비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지원예산액(농특회계)			자부담	계
개별·공동시설	4,980	54,875	32,925	87,800	21,950	109,750
정착촌구조개선	10	6,000		6,000		6,000
톱밥제조시설·이동식톱밥제조기	10	750	450	1,200	300	1,500
합계	5,000	61,626	33,375	95,000	22,250	117,250

4.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 단독시설 : 시·군·자치구(축산담당부서), 읍·면
 - ◆ 그외 시설 : 시·군·자치구 경유 시·도
- 나. 신청자격

(1) 단독(개별)시설

- ◆ 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

농가

- ◆ 축산분뇨시설을 1991. 12말 이전에 설치할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 4대강(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 지역과 새만금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농가
 - (2) 공동시설·툽밥제조시설
-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협조합(툽밥제조시설은 임업조합 포함)
- ◆ 공동시설은 1991. 12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 대상 포함
 - (3) 정착촌구조개선
-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 또는 축산농가
 - 다. 신청절차
 - (1) 단독시설
-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도에 구성된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의 사업계획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999. 1월말까지 시·군(또는 읍·면장을 경유 시·군)에 제출
 - (2)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툽밥제조시설등
-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도에 구성된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의 사업계획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1999.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라. 지원조건
- ◆ 대상사업 : 단독시설·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툽밥제조시설
- ◆ 지원비율 : 보조 30%, 융자 70%
-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리 : 연 4.5%
- 다. 구비서류
-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 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과 첨부서류(시·군 또는 시·도에 구성된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의 사업계획검토의견서 추가)
 - 사업희망자는 시·군(시·도)에서 정한 경우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

료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바.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신고기관

- ◆ 중앙 : 환경부 생활오수과(02-504-9255, 500-4296~7)
- ◆ 시·도 : 환경담당부서
- ◆ 시·군 : 환경담당부서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1. 시책 및 추진방향

- ◆ '98년도까지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성중에 있는 기존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보완사업만 추진
 - 신규단지 조성사업은 중단('99~2000년)
- ◆ 기존축산단지에 대하여 사양관리기술·방역·경영지도를 통하여 경영개선 도모

2.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95까지	96	97	98	99예산안	
사업량	83개소	71	77	30	16	
사업비	계	2,721	880	1,007	408	325
	기금보조	220	61	70	43	1
	기금융자	1,791	553	627	139	226
	지방비	145	50	34	26	1
	자담	565	216	276	200	97

3. '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 기반시설 : 부지정지, 진입도로, 목도,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 등
- ◆ 건물설치 : 축사, 창고, 인공수정실 등의 건물시설
- ◆ 기계·기구 : 축산물생산(사료급이기·급수기등), 운반처리용차량, 기계·기구, 환기·온도·습도 등 환경조절시설, 가축방역용 장비류등
- ◆ 기타시설 : 가축사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
 - ※ 가축구입비, 부지·건물구입비, 사료비, 임차료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 대상축종 : 한우, 돼지, 닭
- ◆ 사업대상자
 - 이미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확정 지정된 단지 또는 기초성이 완료된 단지로서 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자

-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단지 (지원 기준은 축산종합자금제의 시설사업 참조)
-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입식하고자 하는 자(제주도에 한함)
- ※ 재해(농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것) 또는 그외의 사고로 인하여 축사 등 피해를 입은 농가(다만, 법령에 의한 재해대책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함)는 상기 순위보다 우선지원 가능
- 단지구성원 : 한우는 3호이상, 10호 이내인 단지
- (3) 사업기간 : '99~2000년
-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액

- 협업체 : 단지구성원당 3억원이내
- 영농조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 지원비율 : 축산단지 지원기준 참조(별표1)지원조건(융자)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 보완사업계획(기존시설물이 현저히 노후 또는 부족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시설의 증·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신청시 사업대상 토지는 단지구성원이 자체로 확보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었거나 매매계약서등 부지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법적제한 사항이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않는 지역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시설노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첨부 또는 시설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 ◆ 민원발생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 기관은 추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할것(단, 재신청시 대상자이의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사업규모는 자금능력, 경영능력, 축산분뇨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조성
- ◆ 단지 참여농가는 현재 사업현황과 자금부담능력, 담

- 보능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 단지내에서는 가급적 종축 또는 사료를 통일하여야 하며, 생산물에 대한 판매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 출입차량, 출입인의 소독 또는 통제시설, 방역시설과 자율방역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 교잡우의 한우 대체입식 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수립·시행함
- 사업량 : 1,000두
- 두당단가 : 800천원(융자 550, 지방비 50, 자부담 200)

라.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 축산물유통과(02-504-9436)
- ◆ 시·도 : 각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
-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

소산업정보화사업(공공)

1. 시책 및 추진방향

- ◆ 소 개체식별이 필요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및 소를 대상으로 개체식별(ID)관리시스템 구축
- ◆ 가축개량, 사양, 위생, 방역등 각종 전산망들과 연계한 다양한 축산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연도별 지원계획

구분	95	96	97	98	99(예산안)
사업량	2,530천두	1,180	1,180	826	260
사업비(보조)	13,946백만원	12,024	12,709	6,603	1,551
축발기금	13,946				1,551
농특회계		12,024	12,709	6,603	

3.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 사업량 : 260천두
- ◆ 사업내용
 - 정부시책 5개사업에 참여중인 소 및 이들이 생산한 암·수 송아지에 대하여 지정된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고 전산입력하여 사후관리
 - 단,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특수가축공제사업, 종축등록사업의 차명우가 생산한 송아지는 제외
 - 지역축·낙협 담당직원이 조사표를 취합·확인하여 축협 금융 전산망(BBS)을 이용하여 전산입력하면 정보화 본부에서 취합하여 귀표장착비 지

원·정산

- 등급판정결과를 원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Feed-back시스템 구축

◆ 지원사업

- 바코드 귀표장착비: 농가에서 직접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숙달사까지 지역축·낙협 직원·한중협 직원·부락 또는 리·동 단위로 지정된 기자재 관리농가등은 해당농가의 요청에 의거 귀표를 장착할 수 있으며, 장착자등에게 두당 3,000원 지급

◆ 재원 및 지원조건: 축산발전기금, 보조 100%
가. 사업담당부서

◆ 총괄: 농림부 축산물유통과(02-504-9436~7)

◆ 중앙: 한국축육개량협회 정보화본부(02-588-9301~5)

◆ 지방: 지역 축·낙협(사업별 업무담당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1. 시책 및 추진방향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사업대상은 한우번식농가로서 한우암소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참여농가 부담금 납부

- 정부, 지방자치단체, 참여자의 일정을 부담금납부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96	97	98	99	200~6	계
사업량	-	-	373천두	(323천두)	(50천두)	(373천두)
축발			3,000	27,397	4,000	34,397
농특			-	-	-	-
지방비			1,865	1,865	-	3,730
자부담			3,730	-	-	3,730

주) '98사업량 1차분 16개 시범대상조합: 184.5천두(조합당 11.5천두)
2차분 16개 시범대상조합: 188.7천두(조합당 11.8천두)

3. '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23천두	29,262	27,397	27,397	-	1,865	-
관리비	-	1,521	1,521	1,521	-	-	-
보전금	323천두	27,741	25,876	25,876	-	1,865	-

나. 사업시행시기

시범사업기간: '98.7.16~'99.12.31

다. 사업대상: 32개 시·군(도별 4개소)

라. 자금조성 및 관리

◆ 조성

- 보전금재원별부담: 국고 80%, 지자체 10%, 계약자부담 10%

◆ 관리

- 축협중앙회내 『송아지생산안정제 특별회계지침』에 의거 운영

(추진체계)

가. 계약 및 추진절차

* 계약대상

◆ 계약대상자: 시범사업 지역내 한우 암소 사육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 제외

◆ 계약대상우: 바코드귀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 암소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99.12월말까지

- 청약기간: 1차분: '98.7.16~10.31,
2차분: '98.10.20~12.31

- 계약장소: 사업장 소재지 지역축협

- 계약자 준비사항

- 계약자 부담금, 주민등록증, 도장, 축협통장

- 계약대상우의 바코드 귀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 임신중이면 임신개월수, 임신예정우면 수정예정월을 기록하여 지참

* 송아지 생산신고

◆ 송아지 생산신고: 생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계약축협(전화 또는 구두)

* 송아지 생산확인 및 바코드귀표 부착

◆ 확인기관: 지역축협

◆ 확인기간: 송아지 생후 2개월이내(확인시 바코드귀표 부착)

- 조건: 계약우와 송아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기준가격 등

* 안정기준가격



- ◆ 내용 : 송아지의 생산 여건 및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송아지의 단순재생산 기반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격
- ◆ 결정 : 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
- ◆ 공시 :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고시 또는 공고
 - * 시범사업기간중의 잠정적인 안정기준가격 : 700천원

*** 평균거래가격**

- ◆ 내용 : 송아지의 시장 실제거래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격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가격
- ◆ 산출 : 농·축·수산물유통통계조사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에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
- ◆ 공시 : 축협중앙회장이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까지 천원단위로 고시 또는 공고

***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 : 100,000원/두당**

- ◆ 시범사업 기간중 채원의 과다소요 방지와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시·군의 농가와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계약생산송아지 두당보전금 지급상한선을 설정

*** 계약자부담금 : 10,000원/두당**

- ◆ 내용 : 사업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부담하는 금액
- ◆ 결정 : 안정기준가격의 1~3%범위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
- ◆ 공시 :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천원단위로 고시 또는 공고

*** 지급사유**

- ◆ 계약자의 송아지 생산신고에 의거 바코드표부착 및 등록이 완료된 송아지가 만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계약 당시의

안정기준가격 미만인 때

*** 지급절차**

- ◆ 축협중앙회장은 분기 송아지평균거래 가격 공고후 20일이내에 지역축협을 통하여 계약농가의 계좌에 보전금을 입금

*** 지급액** = 지급대상두수 × (안정기준가격 - 분기 평균거래가격)

-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은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
다. 사업추진기관 및 담당부서
- ◆ 사업주관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0-2691)
-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단 (02-224-8078, 지역축협)

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 (공공)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축협조합,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한냉, 식육유통업체, 양축농가, 식육판매업소(신규 포함)등
- ◆ 사업량 및 사업비 : 87개소, 15,897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 (용자 140, 자담 60)
- ◆ 지원조건 : 연리 5~8%, 용자율 70%, 5년거치 10년상환
 - 연리 5% : 축협, 농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한냉, 축산관련협회, 농가
 - 연리 8% : 민간 (식육유통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 ◆ 자금용도 : 매장 건축·매입·임차료,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인테리어비
 - 건축·매입·임차료는 사업비의 50%범위까지 인정(용자금의 50%까지 집행)
- ◆ 시설기준 : 판매장 면적 15평이상
 - 진열장 4m·숙성실 3평·냉동실 1.5평이상, 냉장육절기
- ◆ 사업자 준수사항
 - 시설기준 준수(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쇠고기는 한우고기만 판매하여야 하고, 기타 농·

수·축산물은 국내산 판매

〈육우전문 판매점 설치〉

- ◆ 지원대상: 축협, 낙농관련 영농조합법인·협업체, 낙우회, 낙농농가
- ◆ 사업량 및 사업비: 14개소, 1,96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200백만원 (용자 140, 자담 60)
- ◆ 지원조건: 연리 5%, 용자율 70%, 5년거치 10년 상환
- ◆ 자금용도: 매장 건축·매입·임차료,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인테리어비
- 건축·매입·임차료는 사업비의 50%범위까지 인정(용자금의 50%까지 집행)
- ◆ 시설기준
- 판매장 면적 15평이상
- 진열장 4m·숙성실 3평·냉동실 1.5평이상, 냉장 육절기
- ◆ 사업자 준수사항
- 시설기준 준수 (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쇠고기는 육우고기만 판매하여야 하고, 기타 농·수·축산물은 국내산 판매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사업(공공)

1. 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 축산기자재(자동급이·급수, 착유기, 파이프라인, 자동환기시설, 케이지, 축산처리기 등)생산성을 위한 기계설비, 공공시설 및 축산기자재 상설전시장 설치자금
- (2) 지원대상: 축산기자재 생산업체
- (3) 사업기간: 2개년(98~99년)
- ◆ 업체당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70%이내
- ◆ 지원조건: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2. 2000사업신청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시·(협회 → 시·도로 변경)
- 나.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99년 사업요령과 동일함

다. 사업기간: 2000년(2개년사업 → 당년도 사업으로 변경)

라.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 업체별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70%이내
 - ◆ 지원조건: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마.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축산자조금(공공)

1. '99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 사업기간: 1년
 - ◆ 사업대상자
-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 ◆ 지원내용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축산물 수급 및 소비에 대한 조사 연구
- 생산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 지원규모
- 협회가 조성한 자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 보조지원
- 나.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축산물유통과(02-504-9436~7)
 - ◆ 한국낙농육우협회(02-588-7055)

사료제조시설및 사료원료구입(공공)

1. '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 지원배경

- 반추가축의 능력발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조사료 급여가 필수적임에도 부존자원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육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섬유질사료는 부피가 큰 조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분함량이 높아 제조기술 특성상 배합사료



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공급이 어려움

- ◆ 지원대상자
 - 축협·영농조합법인·협업체 등 생산자단체, 섬유질사료제조업체, 양축농가
- ◆ 지원단가
 - 315백만원(지원단가는 150~450백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지원단가는 지원하는 용자금액 기준임
- ◆ 지원기준
 - 시설비의 70% 용자지원
-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시설비 지원
 - (2)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 ◆ 지원배경
 - 남은음식물을 사료화 함으로써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유도 및 환경오염 방지
 - 국내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배합사료의 수입의존도 경감 및 외화절감
- ◆ 지원대상자: 개소당 300백만원이내(단가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신청 농가가 결정)
- ◆ 지원조건
 - 용자 70% 이내, 자담 30%이상
- ◆ 지원시설의 종류
 - 기계·기구류: 발효제조장치, 원료탱크, 콘베어, 교반기 저장로, 금이배관 종류
 - 건축: 제조시설 건물, 부대시설창고)등
 - ※ 제조시설이 아닌 발효제조기계등 장비만 구입하는 경우도 가능함
 - (3) 농가 자가배합사료 제조
- ◆ 지원배경
 - 대부분 농가에서는 배합사료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사료를 급여하고 있어 축산물의 경쟁력 저하
 - 가축의 생산비중에서 50%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 생산 이용이 필요
 - ※ 배합사료제조업체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옥수수등 수입사료 원료를 '98. 4월부터 농가의 자가배합사료 원료로도 공급가능토록 조

정함

- ◆ 지원대상자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 ◆ 지원단가
 - 제조시설: 315백만원
 - 제조장비: 23백만원(지원단가는 장비의 능력에 따라 40백만원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 지원조건
 - 제조시설 및 장비를 70% 용자지원
- ◆ 지원시설의 종류
 - 제조시설: 건물, 기계 및 시설비 지원(부지구입비 제외)
 - 제조장비: 분쇄기, 배합기, 발효기, 원료계량 및 투입장치등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건축비는 제외)
- 나.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 '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초등학교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
 - 일반급식: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교 등)
- ◆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 초등학생을 추가 선정 가능
 - 일반급식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
- 나.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 시·도: 농정국 축산과(시는 농정과)

가축개량기반구축(공공)

1. 시책 및 추진방향

- ◆ 종축등록

- 종축의 등록, 심사 및 검정사업 확대 추진
- 정액혈통관리 및 등록농가에 대한 개량교육·지도 강화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소 수정란 생산·이식 및 가축인공수정기술 교육
- 가축인공수정기술 향상을 위한 수정사 보수교육
- 능력검정관련 기술 교육 등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예산안)	
사업량	2	2	2	2	
사업비	계	4,440백만원	1,444	825	535
	보 조	4,090	1,076	825	535
	용 자	350	368		
	지방비 자부담				

2. 연도별 지원계획

3. '99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종축등록

-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하여 종축(한우, 육우, 젖소)등록, 심사, 검정 및 부대사업 추진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수정란생산·이식기술교육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 기타 개량총괄기관에서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지원내용

- ◆종축등록: 종축등록 등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비등 소요자금중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지원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성비용등 보조 지원

- ◆지원대상: 한국종축개량협회(종축등록) 축협중앙회(수정란생산·이식,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돼지 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기타)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지원조건: 축발기금 보조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 교육실습용 한우암소(경산우)는 교육생 3명당 1두를 교육개시정까지 축협중앙회장이 구입하여 도지사에게 위탁하고 당년도 최종 교육이 완료된 때에 도지사는 축협중앙회장에게 반환하며 반환된 한우는 축협중앙회장이 판매하여 축발기금에 납입

- 교육회당 15명씩 년 40시간이상(강의 10, 실습 30)실사하되, 교육담당은 강의의 경우 대학등 외래강사, 실습은 내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교육시기는 효과적인 교육실시 및 성과거양을 위하여 가급적 혹서기 및 혹한기를 피하여 실시

- 축협중앙회장은 도종축장의 교육시작이전에 교제제작배포

- 도별 자가인공수정기술 교육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연간교육인원(명)	교육회수(회)	소요예산
경 기	30	2	14
강 원	45	3	17
충 북	30	2	14
충 남	90	6	27
전 북	30	2	14
전 남	60	4	21
경 북	45	3	17
경 남	-	-	-
제 주	30	2	14
축 협			5
계	360	24	143

3) 사업비 지원방법

◆종축등록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교육비용은 교육예정인원 및 예산단가에 의거 분기별로 개산을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에 정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0417-580-3330)

- ◆시·도 축산과, 도 종축장

- ◆축협중앙회 가축개량본부(0455-63-8635), 축산경영지원부(02-224-8433)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02-586-9408)

정책사업부 종자공급요령

(종자공급원칙)

- ◆ 종자신청 : 보조사업자가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직접 신청
- ◆ 종자공급 :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직접공급
- ◆ 종자대·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축협(낙협)에 납부
- ◆ 정산·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정산

시장·군수

- ◆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사업대상자(초지조성 및 관리, 사료작물재배) 명단을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각각 통보
 - ※ 한국낙농육우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TEL 02-588-7055, FAX 584-5144)

- ◆ 종자신청지도
 - 사업대상자가 직접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

-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축협(낙협)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 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축협중앙회(도지회)에 촉발기금 지급요청
- ◆ 축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2개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축협(낙협), 한국낙농육우협회

-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신청 접수, 단, 축·낙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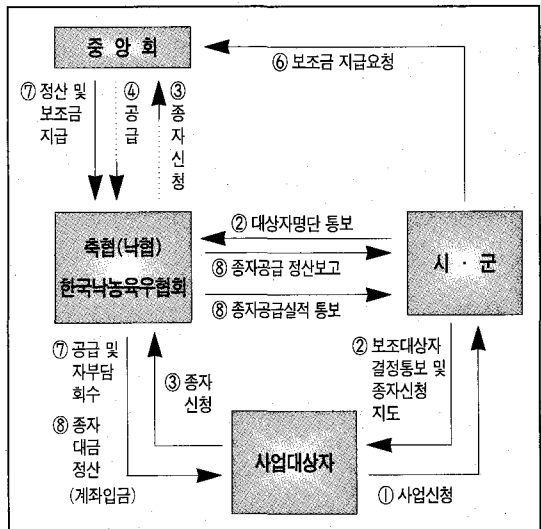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

- ◆ 종자공급
 -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촉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정수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 종자공급체계도 ☞



주) 1. → 은 축협·낙협만 해당됨
2. ⑧ 종자대금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